

#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40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6월 14일  
제안자 : 교 통 위 원 장

## 1. 수정 이유

-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16조(예산 및 결산)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」의 예산안 제출기간에 따른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야기 될 수 있고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결산안 제출 기간과 합치되지 않아 조례 해석에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,

교통문화교육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및 결산안 제출 시기에 대한 일부 조정하여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

## 2. 주요 골자

- 가. 시장에게 제출하는 예산안 제출시기를 “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”로 하고 결산안 제출시기를 “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”로 수정 (안 제16조)

## 3. 참고 사항 : 생략

##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예산 및 결산) ① 수탁자는 해마다 교육원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(의원발의안)	수 정 안(전문위원실안)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	제 1 조 ( 목 적 ) ----- -----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9조 및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1조(목적) ( <u>개정안과 같음</u> )
제5조(운영의 원칙)	제5조(운영의 원칙)	제5조(운영의 원칙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	① ( <u>개정안과 같음</u> )
② 교육원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호·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·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----- -----.	② ( <u>개정안과 같음</u> )
<u>&lt;신 설&gt;</u>	제16조(예산 및 결산) ① 수탁자는 해마다 교육원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<u>1개월</u>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<u>4개월</u>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6조(예산 및 결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3개월</u> ----- ----- ② ----- ----- <u>3개월</u> ----- -----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7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교육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지도·감독) 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16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	<p>제18조(위탁계약의 해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</li> <li>2.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</li> <li>3.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육원을 정상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어려운 경우</li> </ol> <p>제19조(시행규칙) (현행 제16조와 같음)</p>	<p>제18조(위탁계약의 해지) 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 <p>제19조(시행규칙) 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
##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9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교육원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호·제4호·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, 제16조부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예산 및 결산) ① 수탁자는 해마다 교육원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

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교육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8조(위탁계약의 해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
2.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
3.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육원을 정상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어려운 경우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운영의 원칙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교육원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호·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, 「<u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</u>」 제59조 및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운영의 원칙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</u>----- -----.</p> <p>제16조(예산 및 결산) ① <u>수탁자는 해마다 교육원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7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교육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
<p>제16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	<p>제18조(위탁계약의 해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</li> <li>2.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</li> <li>3.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육원을 정상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어려운 경우</li> </ol> <p>제19조(시행규칙) (현행 제16조와 같음)</p>